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

[시행 2021. 4. 8.] [대통령령 제31611호, 2021. 4. 6., 타법개정]

중소벤처기업부(정책총괄과), 044-204-7423

제13조(상근이사의 자격기준)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”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 11. 20., 2015. 8. 3., 2018. 9. 11., 2021. 4. 6.>

1.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
2.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조합, 사업조합,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
4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
5.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
6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,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